

1990年度
患者調査 標本 및 調査票 設計

1990

韓國保健社會研究院

提 出 文

保健社會部 長官 貴下

貴部로부터 依賴 받은 『1990年度 患者調査 標本 및 調査
票 設計에 關한 研究』가 完了되었기에 이 報告書를 提出합니다.

1990. 6. 10.

韓國保健社會研究院長 池 達 顯

研究者

研究責任 : 宋建鏞 (保健研究室長)

研究員 : 桂勳邦 (責任研究員)

宋泰玟 (責任電算員)

金英任 (責任研究員)

都世緣 (電算員)

目 次

I. 緒論	2
1. 背景	2
2. 目的	3
3. 研究範圍	4
4. 研究方法	4
II. 調査票 補完	5
1. 調査項目의 調整	5
2. 完成된 調査票	6
3. 調査票 作成要領	6
4. 醫療機關 標本名簿	19
III. 標本設計	24
1. 調査對象	24
2. 抽出單位	24
3. 標本醫療機關의 抽出	24
4. 標本의 維持 · 管理	30
5. 推定方法	32
IV. 討議	34
1. 1988年度 標本과 關聯된 事項 檢討	34
2. 調査票의 規格	38

I. 結 論

1. 背 景

國民의 疾病傷害와 醫療利用에 관한 統計는 綜合保健計劃의 樹立, 效果的 執行 및 評價 뿐만 아니라 各種 保健醫療人力의 養成과 各種 保健醫療機關 經營 및 行政從事者에게 重要한 資料가 된다.

그러므로, 全國民의 疾病傷害, 醫療利用과 保健醫療서비스를 供給하는 醫療資源(특히 醫療人力과 施設)에 관한 調查가 定期的으로 廣範하게 實施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患者調查는 여러 形態로 實施되어 왔다. 1986년까지 患者調查(疾病傷害統計調查)는 全國의 모든 醫療機關을 對象으로 特定調查基準日 現在의 各 醫療機關의 實態, 그날의 外來 및 入院患者, 그리고 1個月間의 退院患者들의 疾病名을 포함한 몇가지 變數를 全數調查方法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全數調查方法에 의한 調查는 調查의 對象 및 資料가 龐大함에도 이 調查에 投入되는 人的, 物的 資源의 制限으로 인하여 調查管理, 內容檢査, 資料處理는 물론, 그 結果의 正確性 및 迅速성과 관련하여 많은 問題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實情에서 調查와 관련되는 全體的인 業務量을 合理的水準으로 輕減시켜 調查管理, 調查票作成 및 資料處理등에 徹底를 기하여 調查結果의 正確性和 迅速성을 向上시킬 수 있는 標本調查方法 開發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保健社會部는 1988년에는 “疾病傷害統計調查”를 患者調查로 그 名稱을 바꾸면서 調查週期도 3年에서 2年으로 短縮시킴과 동시에 全數調查에서 標本調查로 轉換하기로 決定하고, 醫療施設의 種類別로 合理的水準의 標本을 抽出하기 위한 標本設計와 標本調查에 적절한 調查票를 開發할 必要性을 認識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은 保健社會部가 患者調査를 成功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調査票 開發과 調査對象 醫療機關의 標本抽出을 擔當하였고, 이 研究結果에 따라 1988年 患者調査가 實施되었다.

이와 같은 節次에 의거한 患者調査는 成功的인 것으로 評價되었고, 이 標本調査의 經驗을 基礎로 1990年 患者調査의 標本設計 및 調査票 補完作業을 하게 되었다.

2. 目的

가. 患者調査의 目的

(1) 各種 醫療機關의 現況(人力, 病床, 設立主體 등) 把握

(2) 特定日 및 特定期間(1個月間) 各種 醫療機關을 이용한 患者(外來 및 入院)의 量, 疾病構造, 人口學的 特性, 醫療費支拂 方法, 기타 入院 및 退院에 관한 資料蒐集

나. 本 研究의 目的

患者調査의 目的을 保健社會部가 成功的으로 達成케 함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1) 定期的으로 繼續 使用可能하고, 調査目的에 符合되는 必須 變數가 포함되고, 資料處理業務가 容易하도록 1988年度 調査票 및 調査票의 記載要領의 補完

(2) 資料蒐集 業務量의 輕減, 資料蒐集 努力의 集中, 正確한 資料蒐集 등 非標本 誤差의 極小化 및 醫療機關 種類別 推定이 可能하도록 醫療機關種類別 標本抽出

3. 研究範圍

本 研究의 範圍는 研究目的에 따라 調査票의 補完(記載要領 포함)과 醫療機關 標本抽出로 구분된다.

4. 研究方法

가. 調査票 補完

(1) 調査의 繼續性和 一貫性的 見地에서 1988년에 사용된 調査票의 調査項目의 必要性, 資料蒐集 可能性과 調査結果의 妥當性, 信賴性 및 正確性을 檢討한다.

(2) 특히 記載上 便宜性和 作成된 調査票의 統計生産過程에서 誤差의 極小化 및 資料處理의 容易性을 提高하는 側面에서 調査票를 補完한다.

나. 標本設計

(1) 標本醫療機關數가 많게 되면 調査管理를 철저히 할 수 없 어 調査不應 및 不實調査의 防止가 困難하므로, 標本醫療機關數는 되도록 적게 하되 標本誤差를 考慮하여 合理的인 規模로 한다.

(2) 標本醫療機關數는 적게 되더라도 調査票에 記入되는 患者數는 많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醫療機關을 種類 및 特性에 따라 層化하고, 醫療機關數는 적으나 相對的으로 患者數가 많은 層에서는 모든 醫療機關을 標本으로 포함시켜 全數調査하며, 기타 層에서는 標本을 抽出한다.

II . 調 査 票 補 完

1. 調 査 項 目 의 調 整

가. 調 査 票 I (機 關 調 査)

調 査 項 目 增 減 은 없 다. 다 만 各 醫 療 機 關 에 서 作 成 된 調 査 를 保 健 所 및 保 健 醫 療 院 의 確 認 段 階 에 서 點 檢 할 『 調 査 結 果 』 項 을 新 設 하 였 다.

그 러 나 調 査 票 記 載 上 의 便 宜 를 提 高 하 고, 資 料 處 理 過 程 에 서 一 貫 性 있 게 資 料 入 力 (Key entry) 作 業 이 可 能 하 도 록 調 査 票 의 layout 과 調 査 項 目 의 配 列 을 再 構 成 했 다.

나. 調 査 票 II (外 來 患 者 調 査)

調 査 項 目 中 에 서 副 診 斷 名 이 削 除 되 었 다. 削 除 理 由 은 保 社 部 統 計 諮 問 委 員 會 結 果 에 따 른 것 으 로 서 統 計 作 成 의 業 務 量 減 少 와 不 確 實 할 수 있 는 外 來 患 者 의 副 診 斷 名 까 지 記 載 케 할 必 要 性 이 稀 薄 하 기 때 문 이 다.

다. 調 査 票 III (退 院 患 者 調 査)

退 院 患 者 調 査 票 에 서 는 診 斷 名 을 하 나 더 追 加 해 서 3 個 까 지 記 載 토 록 하 였 다. 이 러 한 決 定 은 保 社 部 統 計 諮 問 委 員 會 結 果 에 依 據 한 것 으 로 서 退 院 患 者 의 診 斷 名 은 보 다 더 正 確 할 수 있 고, 患 者 가 여 러 개 의 診 斷 名 을 갖 는 경 우 에 全 國 水 準 의 疾 病 確 患 水 準 把 握 에 有 益 하 게 活 用 될 수 있 기 때 문 이 다.

2. 完成된 調査票

이와 같은 調査票의 layout 과 調査項目의 調整을 거쳐 完成된 調査票는 附錄에 收錄하였다.

3. 調査票 作成要領

가. 일반적인 주의사항

(1) 본 조사는 통계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질병상해의 양상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이용량을 파악하려는 순수 보건통계생산의 목적만을 가지므로 조사표 작성시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유의한다.

(2) 조사표 작성은 청색이나 흑색 볼펜 또는 만년필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잘못 기재되었을 때에는 적색으로 두 줄(=)을 긋고 정정한 후 작성자가 날인한다.

(3) 배부된 조사표 용지이외의 추가 조사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의료기관별로 복사하여 사용한다.

(4) 『기재안함』으로 표시된 난 (보기 : 외래 및 퇴원환자 조사의 환자주소중 지역번호 등)을 제외한 모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토록 한다.

(5) 조사표 기재시 글자는 한글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글씨는 또박또박 알아보기 쉽게 쓰도록 한다.

(6) 각 의료기관별로 완료된 조사표의 최종점검은 반드시 기관조사표 작성자 직명 및 작성자 성명에 기재 · 날인한 사람이

하도록 하며, 특히 오기되었거나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7) 조사표는 모든 조사대상 의료기관에서 조사표Ⅰ(기관조사), 조사표Ⅱ(외래환자) 및 조사표Ⅲ(퇴원환자)의 3가지 조사표가 모두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퇴원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표Ⅲ(퇴원환자)에는 일반사항만 기입하여 제출한다.

나. 조사표Ⅰ(기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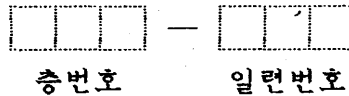
이 조사표는 1990년 8월 29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의료기관 마다 1매씩 작성한다.

- ① 기관명 :
 - 개설허가된 의료기관의 명칭을 기재한다.
- ② 소재지 :
 - 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주소를 기재한다.
- ③ 전화번호 :
 - 각 의료기관의 대표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④ 개설일자 ;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년월일을 기재한다.
- ⑤ 자료처리번호 :
 - 보건사회부에서 조사표를 접수할 때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⑥ 표본번호 :

- 보건소(보건의료원) 기입사항으로 의료기관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 이 항목은 각 의료기관별 고유번호로서 표본추출, 현지조사 및 자료처리의 편의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 번호는 6단위로 구성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 세자리는 표본층(의료기관 종류)번호이며 다음 세자리는 층내 일련번호이다.

보기



- 각 조사표 용지마다 동일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 각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표본 번호는 각 구시군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 배부된 1990년 환자조사 의료기관 표본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 각 보건소는 동 표본명부에 의거하여 표본번호를 조사대상 의료기관에 통지한다.

⑦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번호 :

- 의료보험 단체가 각 의료기관에 부여한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번호를 매 조사표 용지마다 동일하게 기재한다.

⑧ 설립구분 :

- 주어진 보기의 해당번호에 ○표를 하고, 그 번호를 해당란에 기재한다.
- 여기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모자보건센터는 '공립'으로 구분한다.

⑨ 가동병상수

- 허가와는 관계없이 가동 가능한 실제 가동 병상수를 기재한다.
- 병상은 일반병상과 신생아병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총병상수를 합하여 기재한다.
- 일반병상이나 신생아병상이 없는 경우 각각 ○으로 표시한다.

⑩ 종사자수

- 이 항목은 의사 1인당 인구수와 같은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 정규직 및 일반직, 상근자 및 비상근무자의 구분없이 모두를 포함하여 1990. 8. 29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분류내용에 따라 기입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계를 기입한다.
- 의사는 전문의,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일반의로 다시 구분한다.

⑪ 외래환자수(1990. 8. 29의 1일간)

- 이 항목은 조사 기준일 현재의 인구 1,000명당 몇명이 의료기관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그 날로 귀가하였는지와 같은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 외래환자 조사표의 작성을 완료한후에, 외래환자조사표에 기입된 환자수를 기입한다.
- 주의사항
 - ◎ 외래환자조사표에 기입된 환자의 수를 의무기록실, 원무과 또는 관련 부서에서 작성·보관하는 일일외래환자 집계표와 같은 관계자료와 대조·확인한다.
 - ◎ 2개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외래조사표에 기입 누락 및 착오여부를 확인하여 보완한다.

⑫ 입원환자수

- 이 항목은 조사 기준일 현재 인구 1,000명당 입원환자수와 전국적인 병상 이용량 등과 같은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 1990. 8. 29. 24:00 현재 입원중인 환자수를 (1) 1990. 8. 29에 입원한 환자와 (2) 그 이전부터 입원하고 있는 환자로 나누어 기입한다.
- 주의사항
 - ◎ 입원환자수는 조사기준일의 관계 통계자료에 의존하여 기입하게 된다.
 - ◎ 참고 가능한 자료로는 일일 입·퇴원환자집계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 입원환자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1990. 8. 29 당일의 입원환자수 보다는 1990. 8. 29. 24:00 현재의 재원환자수의 파악이다.
 -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병원이나 소규모의 병원에서 재원환자의 명확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간혹 있다.
 -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고, 재원환자수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조사기준시점이전에 각 병실의 간호사나 기타 담당자와 사전 협조가 이루어 지는 것이 효율적이다.

⑬ 퇴원환자수 (1990. 6. 1 - 6.30의 1개월간)

- 이 항목은 조사대상월의 1개월간 인구 1,000명당 몇 명의 의료기관에서 퇴원하였는지와 같은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 퇴원환자조사표의 작성을 완료한 후에, 퇴원환자조사표에 기입된 환자의 수를 기입한다.

- 주의사항

- ◎ 외래환자수 확인과 마찬가지로 퇴원환자조사표에 기입된 환자의 수를 의무기록실, 원무과 또는 관련 부서에서 작성·보관하는 일일입퇴원환자집계표와 같은 관계 자료와 대조·확인한다.
- ◎ 2개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퇴원환자조사표에 기입 누락 및 착오여부를 확인하며 보완한다.

⑭ 조사표매수

- 외래환자 조사표 : 외래환자조사표 12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입한다.
- 퇴원환자 조사표 : 퇴원환자조사표 18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입한다.

⑮ 작성자 직명

- 조사표를 실제 작성한 사람의 직명을 기재한다.
- 여기에서 작성자가 의무기록사인 경우 반드시 의무기록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해당되며, 의무기록업무를 맡았다 해도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명을 기재한다.

⑯ 작성자 성명

- 실제로 조사표를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쓰고 날인한다.

⑰ 대표자 성명

-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⑱ 조사결과

- 보건소 기입사항으로 의료기관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 보건소장은 관할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항목에 ○표한다.

- 조사표 작성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그 조사표를 보건사회부에 제출한다.

⑱ 보건소장 검토

- 보건소 기입사항으로 의료기관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 보건소에서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첫째, 각 의료기관의 고유번호를 파악할 수 있는 표본번호나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번호등이 누락되었는지의 여부이다.
 - ◎ 둘째, 각 조사표에 기재될 내용들이 제대로 빠짐없이 기재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 셋째, 조사표내용이 일관적인가를 확인한다. 즉 기관조사표의 외래환자나 퇴원환자수가 외래환자조사표나 퇴원환자조사표에 기재된 총수와 일치하는지등을 검토한다.
- 이와같은 확인을 거쳐 누락이나 오기등 불성실한 기재사실이 발견되면 이를 재작성하도록 조치하고 수정된 조사표에 대해 다시 내용을 검토한 후 보건소장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한다.

다. 조사표Ⅱ(외래환자조사)

이 조사표에는 1990년 8월 29일 (00:00 - 24:00)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전원을 기입한다.

* 본 조사에서 외래환자란 조사기준당일 조사대상 의료기관에 찾아온(응급실 포함) 환자중 12시간 이내 체류한 환자를 말한다.

- ① 기관명(의료기관 명칭) :
- 조사표 I의 ①항의 기관명을 그대로 기입한다.
- ② 자료처리번호 :
- 보건사회부 기입사항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 ③ 표본번호 :
- 보건소 기입사항으로 의료기관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 ④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번호 :
- 조사표I의 ⑦항과 동일한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 ⑤ 일련번호 :
- 아라비아숫자(1,2,3,4,...)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일련번호란 조사대상이 된 외래환자를 외래환자조사표에 기재한 순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일련번호는 조사표 작성상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작성후 일련번호의 마지막 번호는 외래환자 총수에 해당한다.
 - 일련번호는 진료 Chart 고유번호가 기재되는 진료번호와는 다른 것이다.
- ⑥ 성별 :
- 남자이면 1, 여자이면 2에 ○표시 한다.
- ⑦ 생년월 또는 연령 :
- 이 문항은 환자의 정확한 연령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가능한 생년월을 기재한다.
 - 생년월의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연령을 기재한다.

- 의료보험환자의 경우는 생년월의 기재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그러나 일반환자나 응급환자의 경우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만 연령을 기재토록 한다.

⑧ 환자주소 :

- 이 항목은 어느 지역의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환자의 주소를 시도 및 구시군 단위까지 기입한다(단, 지역번호는 기입하지 않는다)
- 주소는 시도의 기입란과 구시군의 기입란으로 구분되어 있다.
- 구시군 단위는 구인지, 시인지, 군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xx구, xx시, xx군과 같이 기입한다.
- “경북, 경주”라고만 기입하면 경주시인지 경주군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⑨ 질병분류

- 환자의 질병명 및 3단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1979) 19-66페이지에 의거하여 기재토록 한다.
- 외래환자의 질병명은 1개지만 기재한다. 조사기준당일 의료기관에 외래방문하게 된 주된 이유가 되는 질병이나 사유(예방접종, 검진등)를 기재한다.
- 단, 한방기관의 경우 분류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⑩ 진료비 지불방법

- 진료비 지불방법은 6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번호에 ○표시한다.

- | | | |
|---------|----------|---------|
| 1. 전액자비 | 2. 의료보험 | 3. 의료보호 |
| 4. 산재보험 | 5. 자동차보험 | 6. 기타 |

1. 전액자비

어떠한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등의 혜택이 없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일반환자를 말한다.

2. 의료보험

직장이나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이나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의료비의 일부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의료보험단체에서 지불해주는 것을 말한다.

3. 의료보호

의료보호대상자로 정해져 국가가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부조적용자도 이에 포함시킨다.

4. 산재보험

의료비 지불시 산업재해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불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6. 기타

농협공제보험이나 생명보험회사 및 정당등에서 실시하는 유사의료보험등이 포함된다.

⑪ 진료기록번호 :

- 각 의료기관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진료차트나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환자의 진료 『기록부 번호』를 기재한다.

⑫ 조사표매수

- 각 조사표마다 번호를 부여하며 각 조사표별 총매수를 확인한후 각 장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를 기재한다.

㉞ 2매인 경우 : 첫번째 장에는 2매중 1매
두번째 장에는 2매중 2매

㉟ 5매인 경우 : 첫번째 장에는 5매중 1매
두번째 장에는 5매중 2매

: :
:

다섯번째 장에는 5매중 5매

⑬ 작성자 직명 및 ⑭ 작성자 성명

- 조사표를 실제 작성한 사람이 자기의 직명 및 성명을 쓰고 날인하되, “조사표 첫장”에만 성명과 도장을 기재 날인한다.

- 따라서 외래환자 조사표가 각 외래진료실별로 작성된 경우 작성자 직.성명은 각기 다를 수가 있다.

라. 조사표Ⅲ(퇴원환자)

이 조사표에는 199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1개월)간
에 퇴원한 환자 전원을 기입한다.

* 여기에서 질병이 없는 정상 신생아는 퇴원환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①기관명 - ⑧환자주소:

- 조사표Ⅱ(외래환자)의 제①항에서 제⑧항까지의 작성요령과 같이 기재한다.

⑨ 질병분류 :

- 질병명 및 3단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1979) 19-66페이지에 의거하여 기재한다.
- 환자가 여러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질병명은 3가지 까지 기재하도록 한다. 질병명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1)에만 기재하고, 둘이상이면 (3)까지 기재하며 분류번호도 각각 기재한다.
- 질병분류(1)에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게된 직접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이유(예방접종, 건강진단등)를 말하며 (2) 및 (3)의 기타진단명이란 (1)의 주진단명을 제외한 질병명을 기재한다.

⑩ 입원년월일 :

- 199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중 퇴원한 환자의 입원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한다.

⑪ 6월 퇴원일자 :

- 199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중 환자가 퇴원한 날짜를 기재한다.

⑫ 치료결과

- 퇴원할 당시의 환자의 치료상태를 다음의 구분내용에 따라 해당번호에 한곳에만 ○표시한다.
- 이때 환자의 치료결과는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이 항목의 기재는 환자기록부중 앞장에 첨부된 퇴원환자 요약기록등을 참고로 하는 것이 좋다.

- | | | |
|------------|---------|--------|
| 1. 완(경)쾌 | 2. 호전안됨 | 3. 진단불 |
| 4. 가망없는 퇴원 | 5. 사망 | |

⑬ 퇴원형태

- 퇴원시 형태에 따라 해당번호에 ○표시 한다.

1. 정상퇴원 2. 자의퇴원 3. 전원 4. 탈원

- 2.자의퇴원은 환자나 가족이 원해서 퇴원한 형태이다. 이 경우에는 차트중에 “치료사절서약서”등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표시한다.

- 3.전원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이며 의뢰서등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표시한다.

- 4.탈원은 정상적인 퇴원수속절차를 밟지 않고 몰래 도망간 경우등이 포함된다.

⑭ 입원경로

- 입원당시 1.외래를 통했는지 2.응급실을 통했는지 또는 3.기타(신생아 포함) 다른 방법으로 입원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 3.기타에서 신생아는 출산후 곧 질병이 있어 별도로 입원했던 경우만 포함되며, 질병없는 정상 신생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기만성환자가 외래나 응급실을 경유하지않고 주기적으로 입원했다 퇴원하는 경우도 기타에 포함된다.

⑮ 내원경위

- 1.직접래원과 2. 타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타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경우는 의뢰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만 포함시킨다.

⑯ 진료비 지불방법

- 조사표Ⅱ의 ⑩ 항과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한다.

⑰ 진료기록번호

- 조사표Ⅱ의 ⑪항과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한다.

⑱ 조사표매수

- 조사표Ⅱ의 ⑫항과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한다.

⑲ 작성자 직명 및 ⑳ 작성자 성명

- 조사표Ⅱ의 ⑬항, ⑭항과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한다.

** 본 조사의 작성에 따른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할 보건소 및 보건사회부 통계담당관실 (전화 02 - 503 - 7526) 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4. 의료기관 표본명부

환자조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기관은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이다. 그러므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이 환자조사 수행과정에서 조사표의 배부, 수집, 점검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에 도움이 될 『1990년 환자조사 의료기관 표본명부』를 배부하고, 이 명부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동 『표본명부』에 『조사결과』란을 신설하여 이 명부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의 『표본번호』를 부여하고, 조사표를 배부하고, 수집된 조사표의 점검결과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표본명부』의 활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 (1) 환자조사에 있어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은 관내 전체 조사대상이 되는 의료기관(병원급 전수, 의원급 표본)에 대하여 조사표 배부, 표본번호부여, 작성된 조사표의 접수 및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업무는 『1990년 환자조사 의료기관 표본명부』(이하 표본명부라고 칭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2) 표본명부에는 관내의 조사해야할 의료기관수, 의료기관의 표본번호, 요양기호(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 번호), 기관명칭,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주소, 조사결과 등의 항목이 있다.
- (3) 보건소는 조사대상 의료기관에 조사표를 배부할때 반드시 『표본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 표본번호는 여섯자리로 되어 있고, 조사대상 각 의료기관에 고유번호가 주어져 있다.

(예) 서울적십자병원

1	1	0	—	0	0	4
---	---	---	---	---	---	---

분류번호

일련번호

- 의료기관 분류번호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전수(全數) 또는 표본(標本)조사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자리의 번호가 부여되고 있다.

110 = 종합병원 (전수)

120 = 병원 (전수)

130 = 치과병원 (전수)

140 = 한방병원 (전수)

- 150 = 군보건의료원 (전수)
- 160 = 보건소 (전수)
- 170 = 요양취급기관번호가 부여된 5개 모자보건센터 (전수)
- 211 = 의원 (전수)
- 212 = 의원 (전수)
- 213 = 의원 (표본조사)
- 214 = 의원 (표본조사)
- 221 = 치과의원 (전수)
- 222 = 치과의원 (전수)
- 223 = 치과의원 (표본조사)
- 231 = 한방의원 (전수)
- 232 = 한방의원 (전수)
- 233 = 한방의원 (표본조사)
- 313 = 보건지소 (표본조사)
- 323 = 보건진료소 (표본조사)
- 333 = 조산소 (표본조사)

- (4)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은 관내 조사대상 각 의료기관에 표본번호를 부여하고, 조사표(I, II, III)에 표본번호를 기재하여 해당의료기관에 조사표를 배부한다.
- (5)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조사가 완료된 이후 보건소에서는 작성 완료된 조사표를 접수하여 그 결과를 『조사결과』의 해당란에 ○표시한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6개항(완, 폐, 휴, 이, 불, 기)중 하나에 ○표한다.

완 = 『조사완료』의 약자

기관조사표에 기재된 외래환자수 및 퇴원환자수가 관계 조사표에 기입된 환자수와 일치하는지와, 기타 조사항목에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없는지 확인하여 착오가 없는 경우에 『완』에 ○표시한다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표 보완을 지시한다).

다음 5개 항목은 조사불능의 사유와 관련된다.

폐 = 『폐업』의 약자
폐업계를 제출한 경우

휴 = 『휴업』의 약자
휴업계를 제출하여 일정기간 휴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 = 『이전』의 약자
관할구역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불 = 『조사불응』의 약자
조사거부 또는 불응으로 인한 조사불능 상태

기 = 『기타』의 약자
단기간 휴진의 상태(상을 당하거나 단기휴가 등이 이유로)

- (6) 폐업, 휴업, 이전, 불응, 기타의 조사불능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해당의료기관의 조사표는 보사부에 제출해야한다.

- (7) 의료기관에서 조사완료된 조사표와 『표본명부』를 함께 보건사회부에 제출한다.
- (8) 이상 『표본명부』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건소(환자조사 전담요원 지명)



표본명부에 의거 『표본번호』 부여
조사대상 의료기관에 조사표 배부



완료된 조사표 점검 『조사결과』의 해당란에 표시



보사부에 관계자료 송부(표본명부 및 조사표)



(조사업무 종결)

III. 標 本 設 計

1. 調查對象

1990年 患者調查는 그 內容에 따라 機關調查, 外來患者調查, 退院患者調查로 區分되며, 이에 따른 調查對象은 다음과 같다.

醫療機關調查 : 1990. 8. 29 現在 開設중인 全國의 醫療機關

外來患者調查 : 1990. 8. 29에 全國의 醫療機關에 찾아 와서
外來診療를 받은 患者

退院患者調查 : 1990. 6. 1 - 6. 30의 1個月間的 期間中에
全國의 醫療機關에서 退院한 患者

2. 抽出單位

醫療機關을 抽出單位로 하여 標本을 抽出하고, 標本으로 抽出된 醫療機關에 대하여 醫療機關調查, 外來患者調查, 退院患者調查를 實施한다.

3. 標本醫療機關의 抽出

가. 基礎資料

醫療保險管理公團의 1990年 3月 1日 現在 療養取扱機關 電算화일에 收錄된 22,801個 機關의 資料에 新設된 12個 保健所의 資料를 追加하여 22,813個 醫療機關을 抽出單位 醫療機關으로 하였다.

여기서, 母子保健센터의 경우에는 醫療保險療養取扱機關番號가 獨立的으로 賦與된 5個 母子保健센터만을 抽出單位 醫療機關으로 取扱되었다. 따라서, 其他의 母子保健센터는 管轄 保健所에 包含된다.

나. 抽出單位 醫療機關의 分類

抽出單位 醫療機關을 그 特性에 따라 綜合病院, 病院, 齒科病院, 韓方病院, 保健醫療院, 保健所, 母子保健센터, 醫院, 齒科醫院, 韓方醫院, 保健支所, 保健診療所, 助産所의 13個 集團으로 分類하였다.

여기서, 保健醫療院은 既存의 郡保健所중에서 15個 保健所가 그 機能이 病院化되면서 名稱이 保健醫療院으로 變更된 것이다.

다. 全數調查集團과 標本調查集團

綜合病院, 病院, 齒科病院, 韓方病院, 保健醫療院, 保健所, 母子保健센터의 7個 集團은 全數調查集團으로하여, 全數調查集團에서는 총 865개의 醫療機關을 모두 標本으로 抽出하였다. 그리고 나머지의 6個 集團은 標本調查集團으로하여 標本調查集團에서는 일부의 醫療機關을 標本으로 抽出하였다.

라. 標本調查集團에서의 標本醫療機關의 抽出

6個의 各 標本調查集團에서의 層化與否 및 抽出率은 各 集團의 特殊性, 機關數, 標本誤差의 크기, 資料의 活用性등을 綜合적으로 考慮하여 決定하였다.

1) 醫院의 標本抽出

가) 標榜科目分類番號 賦與

法人設立醫院을 除外한 10,358個 個人醫院에 대하여 그 名稱을 위주로 表1에서와 같이 標榜科目分類番號를 賦與하였다. 이때 2個 科目이 競合되는 경우에는 醫師의 專門醫 種別에 따라 分類하였다. 예를 들면, 김피부과비뇨기과원의 경우에는 醫師의 專門醫 種別이 皮膚科이면 皮膚科로 分類하고 泌尿器科이면 泌尿器科로 分類하였다.

表1에서 分類番號가 21(分類不能)인 경우는 名稱이 김의원, 이정선의원 등과 같이 되어 있어 標榜科目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된다.

表 1: 標榜科目 分類番號

番號	科目名	醫院數	番號	科目名	醫院數
1	內科	1,020	12	耳鼻咽喉科	591
2	神經科	28	13	皮膚科	281
3	精神科	193	14	泌尿器科	331
4	一般外科	761	15	診斷放射線	139
5	整形外科	489	16	解剖病理科	1
6	神經外科	111	17	臨床病理科	19
7	胸廓外科	2	18	結核科	12
8	成形外科	88	19	再活醫學科	8
9	産婦人科	1,160	20	家庭醫學科	41
10	小兒科	1,066	21	分類不能	3,629
11	眼科	387	計		10,358

나) 層化 및 標本抽出

10,481個 醫院을 表2 에서와 같이 4個 層으로 層化하였다.

表 2 : 醫院의 層化內譯

層番號	層의 區分	醫院數	標本數	抽出間隔
1	法人設立醫院	123	123	1
2	醫師 2名以上 個人醫院	524	524	1
3	醫師 1名의 個人醫院, (標榜科目番號 1.9.10.20.21)	6,539	727	9
4	醫師 1名의 其他 個人醫院	3,295	366	9
	計	10,481	1,740	-

第1層과 第2層은 全數調查層으로 하여 總647個 醫院을 모두 標本으로 抽出하고, 第3層과 第4層은 標本調查層으로 하여 일부의 醫院을 標本으로 抽出하였다.

第3層에서는 6,539個 醫院을 標榜科目番號가 1(內科), 10(小兒科), 20(家庭醫學科), 21(分類不能), 9(産婦人科)인 順序로 1次分類하고 第4層에서는 3,295個 醫院을 標榜科目番號順으로 1次分類하였으며, 第3層과 第4層의 各 標榜科目內에서는 다시 行政區域(市道 및 區市郡)番號 및 療養取扱機關番號 順序로 2次分類하였다.

그리고, 抽出間隔을 9로 하여 第3層에서 727個 醫院과 第4層에서 366個 醫院을 標本으로 系統抽出하였다.

2) 齒科醫院의 標本抽出

4,614個 齒科醫院을 表 3에서와 같이 3個 層으로 層化하였다.

表 3 : 齒科醫院의 層化內譯

層番號	層의 區分	機關數	標本數	抽出間隔
1	法人設立醫院	8	8	1
2	醫師 2名以上 個人醫院	80	80	1
3	醫師 1名의 個人醫院	4,526	227	20
計		4,614	315	-

第1層과 2層은 全數調查層으로 하여 總 88個 齒科醫院을 모두 標本으로 抽出하였으며, 第3層에서는 行政區域(市道 및 區市郡)番號 및 療養取扱機關番號 順序로 分類하고 抽出間隔을 20으로 하여 226個의 齒科醫院을 標本으로 系統抽出하였다.

3) 韓方醫院의 標本抽出

3,127個의 韓方醫院을 表4에서와 같이 3個 層으로 層化하였다.

表 4 : 韓方醫院의 層化內譯

層番號	層의 區分	機關數	標本數	抽出間隔
1	法人設立 韓方醫院	2	2	1
2	醫師 2名以上の 個人 韓方醫院	37	37	1
3	醫師 1名の 個人 韓方醫院	3,088	386	8
	計	3,127	425	-

第1層과 第2層은 全數調查層으로 하여 總 39個 韓方醫院을 모두 標本으로 抽出하였으며, 第3層에서는 行政區域(市道 및 區市郡)番號 및 療養取扱機關番號 順序로 分類하고 抽出間隔을 8로 하여 386個의 韓方醫院을 標本으로 系統抽出하였다.

4) 保健支所, 保健診療所 및 助産所의 標本抽出

1,281個의 保健支所, 2,035個의 保健診療所, 410個의 助産所를 各各 行政區域番號 및 療養取扱機關番號 順으로 分類하였으며, 保健支所와 助産所의 경우에는 抽出間隔을 10으로 하여 各各 128個 保健支所와 41個 助産所를 標本으로 系統抽出하고 保健診療所의 경우에는 抽出間隔을 20으로 하여 102個의 保健診療所를 標本으로 系統抽出하였다.

마) 標本抽出結果의 醫療機關數

結果的으로 總 22,813個 抽出單位 醫療機關중에서 15.85%에 該當하는 3,616個 機關이 標本으로 抽出하였으며, 標本 醫療機關중에서 45.33%에 該當하는 1,639個 機關이 全數調查部門 (全數調查集團 + 標本調查集團의 全數調查層)의 機關이다.

이에 관한 細部內譯은 表5와 같다.

表 5 : 標本抽出結果

醫 療 機 關 分 類	層 番 號	醫 療 機 關 數	標 本 機 關 數	抽 出 間 隔		
綜合病院	110	221	221	1		
病院	120	342	342	1		
齒科病院	130	5	5	1		
韓方病院	140	31	31	1		
保健醫療院	150	15	15	1		
保健所	160	246	246	1		
母子保健센터	170	5	5	1		
醫院	法人設立	211	123	123	1	
	個人	醫師 2名以上	212	524	524	1
		其他 A*	213	6,539	727	9
		其他 B**	214	3,295	366	9
齒科醫院	法人設立	221	8	8	1	
	個人	醫師 2名以上	222	80	80	1
		其他	223	4,526	227	20
韓方醫院	法人設立	231	2	2	1	
	個人	醫師 2名以上	232	37	37	1
		其他	233	3,088	386	8
				234		
保健支所	313	1,281	128	10		
保健診療所	323	2,035	102	20		
助産所	333	410	41	10		
計		22,813	3,616	-		

* 其他 A : 內科, 小兒科, 家庭醫學科, 産婦人科, 分類不能
- 名稱上的 分類

** 其他 B : 其他의 모든 個人醫院

4. 標本의 維持·管理

가. 標本醫療機關의 變動 및 有故에 대한 處理

標本醫療機關은 基本的으로 1990年 3月 1日 現在의 抽出單位 醫療機關 중에서 抽出한 것이며 實際 調査는 1990年 8月 29日부터 實施하게 되므로, 調査 當時에는 醫療機關의 閉業, 休業, 移轉 등의 變動이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不應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實查過程에서는 이러한 有故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處理한다.

1) 閉業 및 休業의 경우

閉業 또는 休業으로 調査가 不可能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有故로 處理한다.

(1) 調査票 I (機關調査)에 ① 機關名, ② 所在地, ③ 電話番號, ⑥ 標本番號, ⑦ 醫療保險療養取扱機關番號, ⑱ 調査結果의 6個 項目만을 記入하여 提出한다 (調査票 II와 調査票 III도 이와 같은 基本事項만 記入하여 提出한다).

(2) 醫療機關 標本名簿에서 調査結果의 該當 有故事項에 表示한다.

2) 移轉의 경우

(1) 다른 保健所(保健醫療院)의 管轄區域으로 移轉한 경우에는 閉業 또는 休業의 경우와 같이 有故로 處理한다.

(2) 同一 保健所(保健醫療院)의 管轄區域 안에서 移轉한 경우에는 有故로 處理하지 않고 그대로 調査한다. 이때, 醫療機關標本名簿에서 所在地 등의 變更 內容만 修正한다.

3) 調査不應의 경우

調査不應의 경우에는 閉業 또는 休業의 경우와 같이 有故로 處理한다.

4) 休診의 경우

1990年 8月 29日에 休診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處理한다.

(1) 調査票Ⅰ(機關調査)은 休診始作 前日을 基準으로 作成한다.

(2) 調査票Ⅱ(外來患者)에는 ①機關名, ③標本番號, ④醫療保險療養取扱機關番號의 3個 項目만을 記入하고, 調査票 右側 上段의 12 調査票 枚數 記入欄의 欄外 바로 위에 「休診」이라 記入한 다음, 休診期間(2日 以上인 경우) 또는 休診月日(1日 인 경우)을 記入한다.

(3) 調査票Ⅲ(退院患者)에는 該當 事項을 記入한다.

나. 新規 醫療機關에 대한 處理

新規 醫療機關이라 함은 各 保健所 또는 保健醫療院 별로 1990年 3月 1日 以後에 新設 醫療機關 및 管轄區域 밖에서 轉入한 醫療機關을 말하며, 이러한 新規 醫療機關에 대해서는 모두 追加調査 醫療機關名簿에 該當 事項을 記入하고 調査票를 作成한다.

이때, 追加調査 醫療機關의 調査票에서 標本番號는 記入하지 않고, 그 대신 標本番號 記入欄의 欄外 右側에 追加調査醫療機關 名簿의 一連番號를 記入한다.

5. 推定方法

가. 醫療機關 種類別 推定

1) 總數의 推定

醫療機關의 13個 種類別로 各各 어떤 特性 X를 갖는 患者(또는 다른 어떤 集計單位)의 總數推定値는 다음과 같이 算出한다.

$$X'h = \sum_i \frac{N_{hi}}{n_{hi}} \sum_a X_{hia} + \sum_b X_{hb} \quad (1)$$

이 公式에서

- h = 醫療機關의 種類를 나타내는 添字
- i = 層을 나타내는 添字
- a = 標本으로 抽出된 醫療機關을 나타내는 添字
- b = 新規醫療機關을 나타내는 添字
- X' = 特性 X를 갖는 患者의 總數推定値
- X = 特性 X를 갖는 것으로 調査된 患者數
- N = 抽出單位 醫療機關數
- n = 標本으로 抽出된 醫療機關數

여기서, 綜合病院, 病院, 齒科病院, 韓方病院, 保健醫療院, 保健所, 母子保健센터의 경우에는 $i = 1$ 뿐이며, $N = n$ 이 된다. 그리고 醫院, 齒科醫院, 韓方醫院의 경우에는 $i = 1, 2$ 이면 $N = n$ 이 되고, $i \neq 1, 2$ 이면 $N > n$ 이 된다. 保健支所, 保健診療所, 助産所의 경우에는 $i = 1$ 뿐이다.

2) 分散의 推定

X'_h 에 대한 分散은 다음과 같이 算出한다.

$$\text{var}(X'_h) = \sum_i \frac{N_{hi} (N_{hi} - n_{hi})}{2 n_{hi} (n_{hi} - 1)} \sum_a (X_{hia} - X_{hia+1})^2 \quad (2)$$

$$i = 1, 2, \dots, n_{hi} - 1$$

이 公式에서, var = 分散을 나타내는 記號

3) 標準誤差 및 相對標準誤差의 推定

X' 에 대한 標準誤差와 相對標準誤差는 각각 다음과 같이 算出한다.

$$\text{標準誤差} : \text{se}(X'_h) = \text{var}(X'_h)^{1/2} \quad (3)$$

$$\text{相對標準誤差} : \text{rse}(X'_h) = 100 \text{ se}(X'_h) / X'_h \quad (4)$$

나. 全國推定

特性 X 를 갖는 患者의 全國 總數推定値와 이에 대한 分散, 標準誤差, 相對標準誤差는 각각 다음과 같이 算出한다..

$$\text{總數推定値} : X' = \sum_h X'_h \quad (5)$$

$$\text{分散} : \text{var}(X') = \sum_h \text{var}(X'_h) \quad (6)$$

$$\text{標準誤差} : \text{se}(X') = \text{var}(X')^{1/2} \quad (7)$$

$$\text{相對標準誤差} : \text{rse}(X') = 100 \text{ se}(X') / X' \quad (8)$$

Ⅳ . 討 議

1. 1988年度 標本과 관련된 事項 檢討

가. 標本抽出 및 調查結果 要約

1988年度 患者調查의 標本醫療機關抽出 및 患者數 推定 結果를 表 6에 要約하였다.

表 6: 標本醫療機關 抽出內譯 및 推定患者數

分 類	抽出率	標 本 機關數	推定 患者數		
			外來	在院	退院
綜合病院	全數	208	94,097	54,216	112,854
病院	全數	340	38,079	24,536	29,799
齒科病院	全數	5	1,333	45	63
韓方病院	全數	23	2,604	599	848
保健所	全數	241	15,892	29	263
醫院	-	1,624	450,030	18,774	44,110
(1層)*	(全數)	(740)	(48,310)	(4,034)	(8,780)
(2層)	(1/10)	(884)	(401,720)	(14,740)	(35,330)
齒科醫院	-	200	77,526	-	-
(1層)*	(全數)	(6)	(126)	(-)	(-)
(2層)	(1/20)	(194)	(77,400)	(-)	(-)
韓方醫院	1/ 8	430	28,424	48	64
保健支所	1/10	125	26,170	-	-
保健診療所	1/20	100	18,280	-	-
母子保健센터	1/ 2	47	528	40	874
助産所	1/10	44	970	150	2,320
全 體	1/6.3	3,387	753,933	98,437	191,195

* 醫院의 경우 法人設立 및 醫師 2名 以上 醫院 , 齒科醫院의 경우 法人設立醫院

그리고, 表6에 收錄된 推定患者數에 대한 標本誤差는 表7에 相對標準誤差(%)로 提示하였다.

表 7: 推定 患者數에 대한 相對標準誤差

分 類	抽出率	標 本 機關數	相對標準誤差(%)		
			外來	在院	退院
綜合病院	全數	208	-	-	-
病院	全數	340	-	-	-
齒科病院	全數	5	-	-	-
韓方病院	全數	23	-	-	-
保健所	全數	241	-	-	-
病院	-	1,624	2.24	7.26	6.14
(1層)*	(全數)	(740)	(-)	(-)	(-)
(2層)	(1/10)	(884)	(2.51)	(9.12)	(7.67)
齒科醫院	-	200	3.72	-	-
(1層)*	(全數)	(6)	(-)	(-)	(-)
(2層)	(1/20)	(194)	(3.72)	(-)	(-)
韓方醫院	1/ 8	430	4.92	57.35	49.67
保健支所	1/10	125	5.88	-	-
保健診療所	1/20	100	1.17	-	-
母子保健센터	1/ 2	47	12.52	18.57	10.41
助産所	1/10	44	16.14	33.25	16.34
全 體	1/6.3	3,387	1.42	1.39	1.43

* 醫院의 경우 法人設立 및 醫師 2名 以上 醫院, 齒科醫院의 경우 法人設立醫院

나. 基本事項의 檢討

1) 全數調查部門과 標本調查部門

1988年度 調查結果를 全數調查部門과 標本調查部門의 2個 部門으로 要約하면 表8과 같다.

表 8:

1988年度 調査結果 要約

部 門	全體 機關數	標本 機關數	推定 患者數		
			外來	入院	退院
全數調査	1,563 (7.3)	1,563 (46.1)	200,441 (26.6)	83,459 (84.8)	152,607 (79.8)
標本調査	19,930 (92.7)	1,824 (53.9)	553,492 (73.4)	14,978 (15.2)	38,588 (20.2)
計	21,493 (100.0)	3,387 (100.0)	753,933 (100.0)	98,437 (100.0)	191,195 (100.0)

이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數調査部門의 機關數는 全體 機關數의 7%정도 밖에 안되고 全體 標本機關數의 46%정도에 該當하지만 患者數는 入院이 85%, 退院이 8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 標本設計에서도 全數調査 部門은 그대로 存續시켰다.

2) 醫院의 標本抽出

醫院(9,581機關)은 全體 機關數(21,493機關)의 45%로,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體外來患者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全數調査로 실시 되는 各級 病院과 保健所를 除外한 나머지 部分에서는 全體 機關數(20,676機關)의 46%를 차지하지만 外來患者數(601,928名)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醫院중에서는 어떤 方法으로 標本을 抽出하여야만 標本誤差를 減少시킬 수 있는지가 關心의 對象이 된다.

1988년에는 法人設立醫院 및 醫師2名 以上の 個人醫院을 全數 調査層으로 하고 醫師1名인 個人醫院을 標本調査層으로 層化하여, 全數調査層의 醫院은 모두 標本으로 抽出하고 標本調査層에서는 一部の 醫院을 標本으로 抽出하였으며, 이러한 原則은 1990 年에도 그대로 適用하였다.

그러나, 標本調査層에서 一部の 醫院을 標本으로 抽出할 때에, 1988년에는 病床有無, 專門醫 有無 및 免許科目, 行政區域(市道 및 區市郡)番號, 病床數의 順으로 分類·羅列하여 系統抽出하였지만, 1990년에는 醫院의 名稱을 爲主로 한 標榜科目을 이용하여 1次 分類하고, 各 標榜科目內에서는 다시 行政區域(市道 및 區市郡)番號 및 療養取扱機關番號 順으로 分類·羅列하여 系統抽出하였다.

1990년에 標榜科目을 1次 分類 指標로 택한 이유는 보다 同質的인 特性의 醫院들끼리 集團化되어 보다 實質的인 層化의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判斷하였기 때문이다.

3) 母子保健센터의 標本抽出

1988년에는 94個의 母子保健센터 중에서 1/2인 47個 母子保健센터를 標本으로 抽出하였지만, 1990년에는 醫療保險療養取扱機關番號가 賦與된 5個 母子保健센터만을 獨立的인 機關으로 取扱하여 全數調査하고, 療養取扱機關番號가 賦與되지 않은 나머지의 모든 母子保健센터는 管轄 保健所에 包含시켜 調査토록 하였다. 따라서, 母子保健센터에 대하여는 결과적으로 全數調査하는 것과 같게 된다.

4) 新規 및 有故 機關에 대한 處理

1988년에는 3月 1日 基準으로 標本을 抽出하여 8月 24日을 基準日로 하여 調査를 完了한 다음, 8月 24日 現在의 醫療機關數에 따라 標本을 調整하여 資料處理를 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는 標本抽出 基礎資料 作成 基準日인 3月 1日以後의 新規 및 有故에 대한 處理方法으로 ① 新規設立機關은 모두 다 調査하고, ② 標本으로 抽出된 機關에 대하여 閉業, 休業, 移轉, 不能 등의 事由로 調査가 不可能한 경우에는 調査票에 基本事項과 未調査 事由만을 記入하여 提出토록 한다.

2. 調査票の規格

1988년에는 調査票의 크기가 複寫用紙 B4의 規格보다 커서 醫療機關에서 調査票가 不足하게 된 경우 複寫하여 使用하는데 不便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에는 이러한 不便을 解消시키기 위하여 調査票는 複寫用紙 B4의 規格으로 設計하였다.

통계법 제 3 조 : 129 - 21 - 55
일반통계승인번호

이 조사는 통계법에 의하여 실시되며, 수집된 자료는 전산처리되어 통계작성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쓰이지 않으니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
1990년 환자조사 조사표 I (기관조사)

이 조사표는 1990년 8월 29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의료기관마다 1매씩 작성하여 주십시오.

(☒ 부분은 기입하지 않음)

① 기관명 : _____

② 소재지 : _____

③ 전화번호 : _____ ④ 개설일자 : 19 . . .

⑤ 자료처리번호 (보사부 기입) _____

⑥ 표본번호 (보건소 기입) _____ - _____

⑦ 의료보험요양 취급기관번호 _____

⑧ 설립구분
다음 보기중 해당되는 것의 번호에 ○표를 하고 해당란에 그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보 기 〉		
01 국립	06 사단법인	→ <input type="text"/>
02 국립대학	07 재단법인	
03 공립	08 의료법인	
04 학교법인	09 기타법인	
05 특수법인	10 개인	

⑨ 가동병상수
허가와는 관계없이 입원환자를 위하여 실제로 가동 가능한 병상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을 기입)

1. 일반병상	→ <input type="text"/>	병상
2. 신생아 병상	→ <input type="text"/>	병상
3. 합계	→ <input type="text"/>	병상

⑩ 종사자수 :
* 정규직 및 일반직, 상근자 및 비상근자 모두를 포함하여 1990. 8. 29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 의사는 전문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일반의로 다시 구분하여 주십시오.

1. 의사	<input type="text"/>	명	→ 전문의	<input type="text"/>	명	
2. 치과의사	<input type="text"/>	명		→ 전공의	<input type="text"/>	명
3. 한의사	<input type="text"/>	명		→ 일반의	<input type="text"/>	명
4. 약사	<input type="text"/>	명				
5. 조산사	<input type="text"/>	명				
6. 간호사	<input type="text"/>	명				
7. 간호조무사	<input type="text"/>	명				
8. 임상병리사	<input type="text"/>	명				
9. 방사선사	<input type="text"/>	명				
10. 물리치료사	<input type="text"/>	명				
11. 작업치료사	<input type="text"/>	명				
12. 치과기공사	<input type="text"/>	명				
13. 치과위생사	<input type="text"/>	명				
14. 의무기록사	<input type="text"/>	명				
15. 영양사	<input type="text"/>	명				
16. 조리사	<input type="text"/>	명				
17. 기타요원	<input type="text"/>	명				
총계 (1-17)	<input type="text"/>	명				

⑪ 외래 환자수 (1990. 8. 29의 1일간)
외래환자조사표에 기입된 환자수 → 명
* 관계 자료와 대조하여 주십시오

⑫ 입원 환자수 (1990. 8. 29. 24:00 현재)
관련 대장이나 진료기록부등을 참고로 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1) 1990. 8. 29 새로 입원한 환자수 → 명

(2) 1990. 8. 29 이전부터 입원하여 1990. 8. 29 현재 입원중인 환자수 → 명

(3) 총계 : (1) + (2) → 명

⑬ 퇴원 환자수 (1990. 6. 1 - 6. 30의 1개월간)
퇴원환자조사표에 기입된 환자수 → 명
* 관계 자료와 대조하여 주십시오.

⑭ 조사표매수
(1) 외래 환자 조사표 : _____ 매
(2) 퇴원 환자 조사표 : _____ 매

⑮ 작성자 직명 _____ ⑯ 작성자 성명 _____ 인

⑰ 대표자 성명 및 직인 _____ 성명 _____ 직인 _____

⑱ 조사 결과 (보건소 기입) _____ 완료 _____ 폐업 _____ 휴업 _____ 이전 _____ 불응 _____ 기타 _____

⑲ 보건소장 검토 _____ 보건소장 _____ 직인 _____

